



Korea's Policy Response to COVID-19 in Employment Support

Oct 8th, 2020

Foreign Investment Ombudsman

FOREIGN INVESTMENT
OMBUDSMAN

Contents

1

유급휴업·휴직 지원금

2

무급휴업 지원금

3

중소·중견기업 채용보조금

4

가족돌봄휴가 확대

I. 유급휴업 • 휴직 고용지원금

유급휴업 • 휴직 고용지원금

■ 지원 대상

- 지원 대상 :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휴업•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(재고량 50%이상 증가, 생산량 15% 이상 감소, 매출액 15% 이상 감소 등)

■ 지원 내용

- 지원 내용 :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•휴직 수당의 2/3 (1일 한도 6.6만원)
(대규모기업* 1/2~2/3, 일 한도 6.6만원)

■ 지원 요건

- 유급휴업 : 총 근로시간 20% 이상 단축
- 유급휴직 : 근로자별 1개월 이상 휴직 실시
- 지원기간 내 신규채용 금지 및 지원 이후 1개월 감원방지의무

■ 지원 기간

- 최대 240일(코로나 대응, 전 업종 기존 180일에서 확대)

2. 무급휴업 고용지원금

무급휴업 고용지원금

- 지원 대상
 - 지원 대상 :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·휴직을 실시한 경우
- 지원 내용
 - 평균임금의 50% 이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(1일 한도 6.6만원, 최대 180일 지원)
- 지원 요건
 - 휴업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 선 실시
(코로나 대응, 기존 3개월에서 축소)
 - 지원기간 내 신규채용 금지 및 이후 1개월 감원방지의무
- 무급휴업 신속지원 프로그램
 - 유급 휴업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시행, 근로자별 월 50만원 3개월 지급
 - **특별고용 지원업종***의 경우 유급휴업 없이 바로 시행 가능

특별고용 지원업종* :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산업이 악화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
(현재 조선업, 여행업, 관광운송업, 관광숙박업, 공연업, 항공지상조업, 면세점, 공항버스, 전시·국제회의업 지정)

3. 중소·중견기업 채용보조금

특별고용촉진 장려금

- **지원 대상**
 - '20. 2. 1 이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7. 27(사업 시행일) 이후 채용
(기존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대상에서 전범위적으로 한시적 확대)
- **지원 내용**
 - 우선지원대상기업(월100만원), 중견기업(월 80만원)
 - 사업주 지급액의 80%한도, 6개월간 지급하며 '20 년도 한시적 시행
- **지원 요건**
 -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
 - 채용자 채용 전 고용노동부 구직등록
 - 채용 1개월 전부터 지원기간 내 감원방지의무

4. 가족돌봄휴가 확대

가족돌봄휴가 확대 및 긴급지원

- **지원 대상**
 - 코로나19 관련,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경우 휴가 사용자
(자녀의 휴원 및 유증상자 돌봄 필요 등)
- **지원 내용**
 - 가족돌봄휴가 확대(기존 10일 -> 20일, 무급)
 - 가족돌봄휴가(9.9~12.31) 사용 시 지원금 일 5만원, 최대 5일 지원
(개인이 직접 신청)
- **지원 제외**
 - 대규모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
(가족돌봄휴가는 사용 가능하나 지원금 미 지급)

The background features a white central area with a large, faint blue arrow pointing right. On the left and right sides, there are overlapping blue geometric shapes (triangles and polygons) and semi-transparent photos of people in business attire. The photos show a woman on the left and a man on the right, both smiling and looking towards the center.

THANK YOU